보은군노인·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 중 취업규칙 제11조

취업규칙 1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 직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함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71조(벌칙)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(벌칙)부터 제42조(벌칙)까지 또는 「형법」 제28장(유기와 학대의 죄), 제40장(횡령과 배임의 죄. 단, 제360조(점유이탈물 횡령)은 제외한다)의 죄를 범하거나 이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 가.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   나.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   다.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성폭력범죄(단,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)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 또는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10. 전직 근무지에서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11.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
12. 경력 또는 학력,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
13. 기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